

수원고등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207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20732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합1617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2. 3. 17.

판결선고 2022. 5. 19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가합16177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. 9. 30.자 30,000,000원, 2017. 10. 1.자 30,000,000원, 2017. 10. 2.자 35,000,000원, 2017. 10. 10.자 350,000,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44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(을 제10호증)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호, 판사 장지용, 판사 이봉락